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안내 근거 마련〉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47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11. 25.
3. 회 부 일 : 2025.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집계된 전체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건수는 총 49,624건으로 나타남.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등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2025년도 기준 사전등록률은 미진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① (생략) <u><신설></u>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 <u>경찰청장은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과 등록 방법·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u>
④ 제1항에 따른 <u>지문등정보의 범위</u> ,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u>등록 방법 및 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u>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파기 방법과 절차</u> 및 <u>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u>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 <u>지문등정보의 범위와</u> ----- -- <u>등록 방법·절차</u>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제3항----- 제4항----- -----.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7조의2제1항).¹⁾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등정보 등록률은 2020년 55.8%에서 2024년 67.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등록 아동의 99.8%가 등록 당시 10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제도가 특히 저연령 아동의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연도별 등록 현황(아동)>

연도	전체 아동수 (18세 미만)	등록 인원	등록률(%)
2020년	7,928,907명	4,425,192명	55.8%
2021년	7,710,946명	4,588,146명	59.5%
2022년	7,483,944명	4,773,256명	63.8%
2023년	7,271,460명	4,844,708명	66.6%
2024년	7,077,206명	4,806,167명	67.9%

※자료: 경찰청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해당 신청서(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④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범위,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파기 방법과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종아동등 연령대별 등록 현황>

연도	등록 아동 수	등록 아동 중 등록 당시 10세 이하		등록 아동 중 등록 당시 11세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5. 11월	4,728,450명	4,717,933	99.8%	10,517	0.2%

※자료: 경찰청

< 연도별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해제 현황2) >

(단위 : 건)

구분	계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해제	미해제	접수	해제	미해제	접수	해제	미해제	접수	해제	미해제
'20년	38,496	38,426	13	19,146	19,054	4	7,078	7,089	6	12,272	12,283	3
'21년	41,122	40,987	21	21,379	21,257	5	7,166	7,168	7	12,577	12,562	9
'22년	49,287	49,219	99	26,416	26,357	58	8,344	8,337	29	14,527	14,525	12
'23년	48,745	48,604	73	25,628	25,516	8	8,440	8,434	42	14,677	14,654	23
'24년	49,624	49,493	71	25,692	25,602	14	8,430	8,404	41	15,502	15,487	16

※자료: 경찰청

< 장애인 및 치매환자 사전등록 현황 및 등록률 >

연도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대상자	등록건수(등록률)	대상자	등록건수(등록률)
2025. 11월	383,887명	124,072건 (32.3%)	786,949	369,862(47.0%)

※자료: 경찰청

- 2) △ 실종아동등 접수 통계 : 발생연도와 무관하며, 과거 발생건에 대한 당해연도 접수건을 포함(예: '18년에 발생하였으나 '22년에 접수 → '22년 접수로 계산)
- △ 실종아동등 해제 통계 : 접수연도와 무관하며, 과거 접수건에 대한 당해연도 해제건을 포함하고 있어 접수건 보다 많을 수 있음(예: '18년에 접수하였으나 '25년에 해제 → '25년 해제로 계산)
- △ 실종아동등 미해제 통계 : 계속 추적·수사중인 사건을 의미하며, 접수연도와 관계없이 실종발생 당해연도 기준으로 산출(예: '18년에 발생하였으나 '25년에 접수 → '18년 미해제로 계산)

한편, 최근 연도별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신고 미해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아동의 지문등정보 등록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 실종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 기준 등록률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여전히 실종신고 미해제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등록 제도에 대한 보호자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임.

< 장애인 및 치매환자 사전등록 현황 및 등록률 >

연도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대상자	등록건수(등록률)	대상자	등록건수(등록률)
2025. 11월	383,887명	124,072건(32.3%)	786,949	369,862(47.0%)

※자료: 경찰청

현행 법령체계상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는 사전등록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보호자에게 해당 제도를 안내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실무적으로는 경찰청이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해 제도를 안내³⁾하고 있으나, 법률에

3) 경찰청은 실종예방 사전등록 제도 홍보를 위해 포스터·리플릿·홍보영상 등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에 배포하고, 경찰서별로 어린이집·초등학교·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현장 홍보 및 등록을 실시하며, 박람회·지역 축제 등에서 실종예방 사전등록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음.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여짐.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경찰청장의 안내 권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 및 복귀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보호자의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적·정책적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일정한 입법적 실익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경찰청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제도를 안내·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사전등록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44